



##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

공고번호: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-1515호

용역명: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(지열시스템)

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.

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(063-280-2330), 용역 관련은 (063-280-338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- 다 음 -

1. 용역입찰공고
2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
3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
4.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
5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6. 용역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
7.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
##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

### 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 고 명   |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(지열시스템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초 금 액 | 1,970,780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출 일 시 | 2026. 09. 10.(목) 10:00 |
| 추 정 가 격 | 1,791,618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마 감 일 시 | 2026. 09. 15.(화) 10:00 |
| 부가 가치세  | 179,162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찰 일 시 | 2026. 09. 15.(화) 11:00 |
| 용 역 기 간 | 착수일로부터 240일<br>(공휴일 포함)                  | 개 찰 장 소 | 전북도 입찰집행관PC            |

#### 1-1 용역규모

1-1-1 사업현장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번지 일원

1-1-2 과업내용 :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(지열시스템)의 재해예방 기술지도

#### 1-2 기초금액 금1,970,780원

### 2. 입찰 및 계약방식

2-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(이후부터 “입찰”이라 함)대상입니다.

2-2 본 입찰은 **지역제한(전북특별자치도)**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.

2-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.

◆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**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**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 3. 참가자격

3-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, **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(업종코드:5612)등록을 필한 자**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.

3-1-1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**건설공사 분야 재해예방기술전문지도기관 중 업무지역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등록한 자**

※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-정보공개-사전정보 공표목록-산재예방/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” 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.

3-1-2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)까지, **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)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.**

3-2 본 입찰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.

3-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.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(개찰일)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-3-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.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(2인 이상)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3-3-2 업체의 상호(법인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)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(g2b)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.

### 4. 공동도급 사항

4-1 본 용역은 단독도급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### 5.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

5-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문화산업과(063-280-3387)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
### 6. 입찰서 제출

6-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.

6-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,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<http://www.g2b.go.kr>)의 “입찰 → 입찰진행 → 입찰진행/참가”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-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6-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,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6-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,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6-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“입찰 → 입찰진행 → 나의 투찰내역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7. 입찰의 무효

- 7-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-입찰유의서,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.
- 7-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(입찰순위)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
## 8. 예정가격작성

- 8-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±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## 9. 낙찰자결정

- 9-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%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※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안부 예규)』 제5장.수의계약 운용요령, 제10절.수의계약 대상심사[별표1]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<수의계약각서> 및 『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<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>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9-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,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9-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,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,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## 10. 낙찰통보 및 계약

- 10-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의 “입찰 → 입찰진행 → 나의 투찰내역”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.

- 10-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**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(입찰자격 증명서류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사용인감계(인감증명서), 업종등록증,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, 행정처분확인서 등)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.
- 10-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**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**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.

## 11. 청렴계약 이행준수

- 11-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(www.g2b.go.kr)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11-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## 12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- 12-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, 제5조 및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.
- 12-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,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(날인)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※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5조, 제9조)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13. 기타 유의사항

- 13-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.5%에 해당하는 전복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
- 13-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13-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3-4 계약체결 이후 “전복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공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13-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(☎ 1588-0800)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13-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, 동법 제41조의 2 (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)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3-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
감사관실(063-280-2395) 및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buk.go.kr>-소통민원)을 통  
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14.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

- 설계서 열람 및 용역관련 문의: 전북도 문화산업과(☎063-280-3387)
-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: 전북도 회계과(☎063-280-233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9.

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

<수의계약 각서-1>

각 서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업 체 명  |  |
| 대 표 자  |  |
| 소 재 지  |  |
| 업종(등록) |  |

상기 본인(법인)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  
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
계약의 해제·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
하지 않겠습니다.

불임 : [별표1]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.

202 . . .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 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4호 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|
|     | 발주내용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      |     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[ ] 단체 [ ] 기타 |

|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, 국회의원의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발주자<br>확인<br>사항 |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“예”를 답변한 경우,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*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년 월 일 |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| 계약상대자(확인인) | (서명 또는 인)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
##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\_\_\_\_\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    )

: 아니오 (    )

본 사(본인)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,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주 소:

업체명:

대표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